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목 차 〉

1. 정관 일부 개정(안)	3
2.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안)	5
3.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13
4. 간행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16
5.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칙 제정(안)	19

1 정관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안정적인 연구원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인 기금의 일부를 사용함에 따라,
- 기본재산 변동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실제 기본재산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출연금 감액 등의 사유로 부족해진 연구원 수입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경기연구원 기금 **일십칠억팔천만원**을 사용
- 이에 기금사용에 따른 기본재산 변경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기본재산의 현황과 정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별표1. 연구원의 기본재산(제5조 관련)

재산구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기본재산	금 4,900,000,000원 (금 사십구억원)	금 3,120,000,000원 (금 삼십일억이천만원)

※ 단, 경기도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금액이 변경 가능함

3. 개정 정관(안) : 덧 붙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정관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원의 기본재산(제5조 관련)

재산구분	금액	비고
기본재산	금 3,120,000,000원 (금 삼십일억이천만원)	

부 칙(2026. . .)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연구원의 기본재산(제5조 관련)			[별표1] 연구원의 기본재산(제5조 관련)		
재산구분	금액	비고	재산구분	금액	비고
기본재산	금 4,900,000,000원 (금 사십구억원)		기본재산	금 3,120,000,000원 (금 삼십일억이천만원)	

2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 공투센터 회계처리 엄정성 및 재정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책임자(회계관직)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조직도상에 포함된 2개 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함
- 부서별 업무분장을 실제 업무수행에 맞게 개정하여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기능 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투자분석직(투자분석위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본원 연구직 임용자격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인사복무규정과의 일관성 유지하고자 함

2. 개정 주요 내용

- 조직도상에 포함된 2개 위원회(타당성 검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별도 마련함 [제4조 ②항 삭제, 제4조 2 신설, 별표1 개정]
- 운영규정 장 제목을 ‘제4장 예산’에서 ‘제4장 예산 및 회계’로 개정함 [제4장 제목 개정]
- 공투센터 회계관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명확히 기술함 [제10조 2 신설]
 - 징수관 : 소장 / 경리관 : 총괄기획부장 / 지출원 : 경리 업무담당 / 채권관리관 : 소장 / 채무관리관 : 소장
- 센터내 부서별 담당업무 분장 내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별표1 개정]
- 투자분석위원 임용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 [별표3 개정]

3. 개정규정(안) : 덧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4조 ②항을 삭제하고 제4조 2를 신설한다.

제4조(기구 및 정원) ②삭제

제4조2(위원회 등) ①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예산 및 회계

제4장에 제1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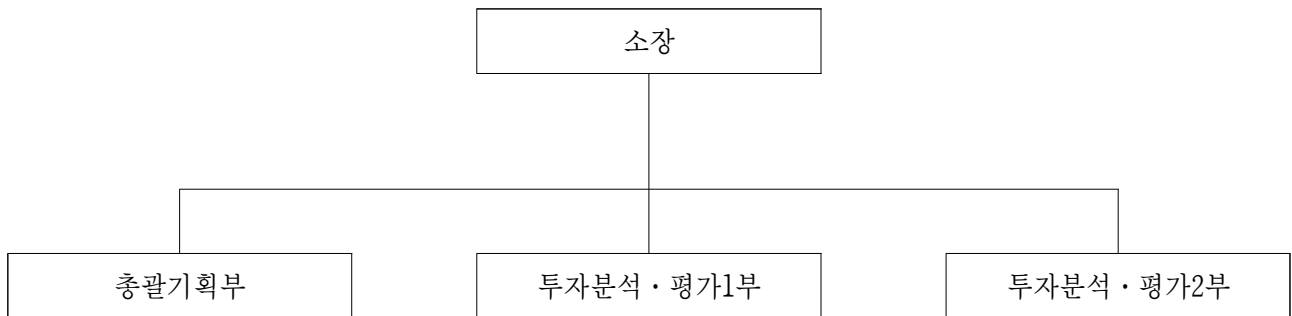
제10조2 (회계책임자의 지정) ①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소장
2. 경리관 : 총괄기획부장
3. 지출원 : 경리 업무담당
4. 채권관리관 : 소장
5. 채무관리관 : 소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책임자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한다.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에서 운영위원회와 타당성 검수위원회를 삭제하고 부서업무분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총괄기획부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투자분석·평가 1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중양투자심사 지원 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연구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투자분석·평가 2부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연구

[별표 3] 임용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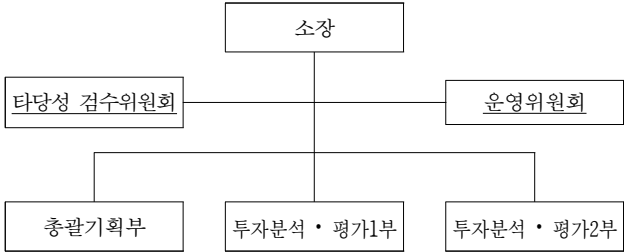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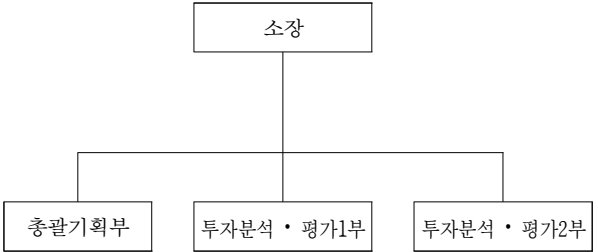
임용자격 기준

1. 소장 및 투자분석직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소장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투자분석위원급 또는 선임연구위원급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투자분석위원 ‘가’ 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선임투자분석위원 ‘나’ 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투자분석위원 ‘가’ 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투자분석위원 ‘나’ 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투자분석원	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기구 및 정원)</u> ①센터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은 [별표1],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센터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타당성 검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u><제4조2 신설></u> 제4장 예산 <u><제10조2 신설></u>	<u>제4조1(기구 및 정원)</u> 센터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은 [별표1],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항 <삭제> <u>제4조2(위원회 등)</u> ①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예산 및 회계 <u>제10조2(회계책임자의 지정)</u> ①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소장 2. 경리관 : 총괄기획부장 3. 지출원 : 경리 업무담당 4. 채권관리관 : 소장 5. 채무관리관 : 소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책임자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서명</th><th>담당업무</th></tr> </thead> <tbody> <tr> <td>총괄기획부</td><td>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td></tr> <tr> <td>투자분석·평가 1부</td><td>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신설> <신설> <신설></td></tr> <tr> <td>투자분석·평가 2부</td><td>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td></tr> </tbody> </table> [별표 3] 1. 소장 및 투자분석직 <table border="1"> <thead> <tr> <th>직급</th><th>임용자격기준</th></tr> </thead> <tbody> <tr> <td>소장</td><td>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투자분석위원급 또는 선임연구위원급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선임투자분석위원 '가' 급</td><td>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body> </table>	부서명	담당업무	총괄기획부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투자분석·평가 1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신설> <신설> <신설>	투자분석·평가 2부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직급	임용자격기준	소장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투자분석위원급 또는 선임연구위원급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투자분석위원 '가' 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서명</th><th>담당업무</th></tr> </thead> <tbody> <tr> <td>총괄기획부</td><td>----- <삭제> <삭제> -----</td></tr> <tr> <td>투자분석·평가 1부</td><td>----- ----- 중앙투자심사 지원 <이동>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이동>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이동></td></tr> <tr> <td>투자분석·평가 2부</td><td>----- <삭제> ----- 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연구 <이동></td></tr> </tbody> </table> [별표 3] 1. 소장 및 투자분석직 <table border="1"> <thead> <tr> <th>직급</th><th>임용자격기준</th></tr> </thead> <tbody> <tr> <td>소장 (좌동)</td><td></td></tr> <tr> <td>선임투자분석위원 '가' 급</td><td>가.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td></tr> </tbody> </table>	부서명	담당업무	총괄기획부	----- <삭제> <삭제> -----	투자분석·평가 1부	----- ----- 중앙투자심사 지원 <이동>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이동>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이동>	투자분석·평가 2부	----- <삭제> ----- 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연구 <이동>	직급	임용자격기준	소장 (좌동)		선임투자분석위원 '가' 급	가.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서명	담당업무																												
총괄기획부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투자분석·평가 1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신설> <신설> <신설>																												
투자분석·평가 2부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직급	임용자격기준																												
소장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투자분석위원급 또는 선임연구위원급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투자분석위원 '가' 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서명	담당업무																												
총괄기획부	----- <삭제> <삭제> -----																												
투자분석·평가 1부	----- ----- 중앙투자심사 지원 <이동>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이동>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이동>																												
투자분석·평가 2부	----- <삭제> ----- 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연구 <이동>																												
직급	임용자격기준																												
소장 (좌동)																													
선임투자분석위원 '가' 급	가.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현행		개정안	
선임투자 분석위원 ‘나’ 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 <u>박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u>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다. <u>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라. <u>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선임투자 분석위원 ‘나’ 급	가. ----- <u>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나. ----- <u>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다. <u>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라. <u>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u>
투자분석 위원 ‘가’ 급	가. 해당 분야 <u>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u>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다. <u>석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라. <u>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투자분석 위원 ‘가’ 급	가. ----- <u>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나. ----- <u>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다. <u>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라. <u>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u>
투자분석 위원 ‘나’ 급	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 다. <u>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라. <u>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투자분석 위원 ‘나’ 급	가. ----- 나. ----- 다. <u>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u> 라. <u>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u>
투자분석원	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투자분석원	(좌동)

3.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민법상 성년연령 및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인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 연령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공무원 행정원이 행정직 특수업무수당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직계비속 연령기준 변경(20세 미만 → 19세 미만) (안 제33조 제2항)
- 특수업무수당 대상 업무¹⁾를 수행하는 공무원 행정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32조의2)

3. 개정 규정(안) :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1) [별표8]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 :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시설·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중 “20세”를 “19세”로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무직 행정원 중 [별표 8]의 특수업무수당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호봉제(행정직)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2026. .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가족수당) ①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인 ③~⑧ (생략)	제33조(가족수당)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9세 미만----- ----- 19세 이상 ----- ----- ③~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공무직의 보수) ①공무직의 보수는 연봉제(연구직)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공무직의 초과근무수당은 호봉제(행정직)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신설>	제32조의2(공무직의 보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공무직 행정원 중 [별표 8]의 특수업무수당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호봉제(행정직)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4 간행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수탁연구과제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원칙에 따라, 원내 간행물 관리 및 대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분쟁 소지 제거

2. 주요 내용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제4조2항에 따른 수탁연구과제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원내 간행물에서 제외함(안 제3조, 제6조)
- 수탁연구과제의 보고서는 원내 간행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외주의 관리는 연구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청시 연구기획실장 협조를 추가함(안 제10조, 제13조)

3. 개정 규칙(안) :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간행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경기연구원 간행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단서 “다만, 세미나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는 제외한다.”를 “다만,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연구과제와 세미나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슈분석"를 "기본과제, 정책과제, 이슈분석"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를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 협조 및 원장의”로 한다.

부 칙(2026.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기타 자료를 말한다. 다만, 세미나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는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 . 다만,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탁연구과제와 세미나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는 제외한다.
제6조(간행물의 보관) ① 간행물 관리부서는 연구원에서 출판한 간행물의 적절한 보관부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1부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과제는 제외한다. ②~③(생략)	제6조(간행물의 보관) ①----- ----- ----- (단서 삭제) ②~③(현행과 같음)
제10조(적용대상) ① 대외주의의 적용대상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정책연구과제, 수탁과제, 이슈분석 등으로 한다. ②(생략)	제10조(적용대상) ①----- ----- 정책연구과제, 이슈분석 ----- ②(현행과 같음)
제13조(대외주의 결정) ①(생략) ② 연구책임자는 대외주의 등록 및 해지를 요하는 보고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대외주의 등록·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디지털경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서 작성시 대외주의 처리기간 또는 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여 향후 해지가능한 시기와 조건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대외주의 결정) ①(현행과 같음) ②----- ----- ---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 협조 및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 ----- -----.
	부 칙(2026.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칙 제정(안)

1. 제정 이유

- 기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운영 지침」의 문제점
 - 규정형식이 규칙이 아닌 지침으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가이드라인” 기준에 미달
- 이에 해당 「운영지침」을 규칙화하여 연구원 CP운영 수준을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규칙으로 승격
- 필수 법규 정의 신설, 최고경영자 분기보고 및 지시 추가, 부서장 등 책임·권한 신설, 교육의무화 및 차별화, 위험평가 결과 3단계(상중하) 구분, 효과성 평가 연2회 및 시정조치 등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내용 규정화

3. 제정형식

- 기존 법령과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당해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폐지·대체방식으로 법령 제정

4. 제정규칙(안)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칙

제정 2026.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기준 및 그 운용 조직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과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법규 위반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 법규준수활동을 의미한다.
3. “자율준수위원회”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주관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4. “자율준수편람”이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란 연구원의 CP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6. “CP전담부서”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CP를 운영하는 실무조직을 말한다.
7. “CP운영지침”이란 본 규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마련된 세부지침을 말한다.
8. “사전업무협의제도”란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CP전담부서 또는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협의를 미리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상감사도 해당된다.
9. “직접보고제도”란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직원의 명백한 법규 또는 CP제도 위반행위를 확인하거나 임직원이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직접 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0. “필수 법규”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연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가 요구되는 법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제2장 CP의 요건

제4조(최고경영자의 역할) ① 원장은 연구원의 CP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행동강령 또는 준수정책을 포함한다.)을 공개적으로 연 1회 이상 표명하여야 한다. 표명 및 행동강령·준수정책은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CP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제도가 연구원 운영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효과적인 CP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전담 부서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CP문화 저해 행위 등 CP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연구원의 CP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CP전담부서로부터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분기 1회 이상(부득이한 경우 반기 1회 이상)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CP 실천의지가 연구원 전 부서의 사업목표 및 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⑧ 원장은 CP 문화 촉진을 위한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2(책임과 권한) ① CP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원장, 자율준수관리자, CP전담부서, 부서장 및 일반 임직원으로 구분하여 이 지침 및 별도 지침에서 정하며, 그 내용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부서장은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준수를 관리·감독하고, 소속 임직원의 CP 활동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제5조(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① 연구원은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최고경영자(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본 규정을 포함한 CP기준과 절차 등을 CP편람에 수록하여 모든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CP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① 자율준수편람은 CP기준과 절차 외에도 준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 법규의 내용은 모든 임직원이 윤리·준법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 자율준수편람은 연구원의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점검하여 최신 내용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제7조(CP교육) ① 연구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CP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CP교육 계획은 계층별(신입·중간관리자·임원), 부서별, 업무 관련성별로 교육대상과 과정을 구분하여 수립하고, 연간 교육은 분기 단위(부득이한 경우 반기 단위)로 계획하여 시행한다.

③ CP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실시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CP교육 계획 수립 시 직전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임직원 의견(VOC),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CP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그 집행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예산이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⑥ 최고경영자 및 임원은 CP 관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⑦ 교육 미이수자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필수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를 분기 1회 이상(가능한 경우 월 1회)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위반자 대상 교육에는 최신 법 위반사례와 사전예방 방법을 포함한 별도 교재를 활용하고, 교육 후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의2(CP교육의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참석률, 이수율, 만족도, 학습성과(이해도) 등 4가지 이상의 지표로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는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내부감시체계) ① 연구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감시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 평가제도
2. 사전업무협의 제도
3. 직접보고 제도
4. 내부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5. 모니터링과 감사 제도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험평가를 연 1회 이상(고위험 분야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 3단계(상·중·하)로 구분하되, 중간 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감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전업무협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 협의 절차 등은「일상감사 운영지침」에 따르되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자율준수관리자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접보고제도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반기별 1회 이상 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내부신고 절차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어서는 아니 된다.

⑦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감사를 실시하고 자가모니터링 및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⑧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신고(고발) 처리의 경과 및 결과를 자율준수위원회에 연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필수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원의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전담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3.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CP제도 위반행위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 이외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 해당 임직원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임직원이 속한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연구원은 CP운영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 인사복무규정 제4장 제25조에 따라 적절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부서 및 임직원에게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하며, 포상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며, 동 예산이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정기감사를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원장 및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한 인사 제재조치, 예산과 조직의 변경, CP규정 개정 추진 등을 의결할 수 있고 원장은 그 의결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모든 임직원에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④ CP제도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CP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CP제도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성과
4. 법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연구원에 미친 영향
5. CP전담부서의 CP제도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6. CP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제도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7. 공정거래 담당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효과성 평가·감사 수행 인력의 자격 등) ① 제11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감사 업무 수행 경험
2.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자격 보유 등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정하는 자격

② 평가·감사 수행자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 관한 사항을 평가·감사할 수 없다.

제3장 CP운영 조직 및 업무

제1절 자율준수위원회

제12조(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 자율준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회의”에서 자율준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시 자율준수위원회 내에 자율준수실무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CP전담부서가 담당한다.

제13조(자율준수위원회의 권한) ①자율준수위원회는 CP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 또는 결정할 수 있다.

②자율준수위원회는 CP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여부에 대해 안건 상정을 의결할 수 있다.

③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CP전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자율준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사건의 신청자에게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제13조의 2(자율준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행위기준) 자율준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위원회 활동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제14조(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원장(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구)이 임명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의 자로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GRI 청렴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또는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후임자 선임까지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전 임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을 자율적·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다만, 연구원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되 그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CP운영에 필요하다고 자율준수위원장이 인정하는 권한

제1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간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2. CP제도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3.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4. 임직원의 CP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실시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
7. CP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8.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제 추진 정책 지원 등 협조
9.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① 연구원은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원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CP전담부서) ① CP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CP운영을 주관한다.

② CP전담부서는 원장이 지정한다.

③ CP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보고 후 연구원의 다른 부서 임직원에게 CP운영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없이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④ CP전담부서는 다른 부서 임직원과 CP제도에 대해 소통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의 의무 및 보호

제19조(임직원의 의무 일반) CP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2. CP제도 및 편람 내용에 대한 숙지
3. CP제도에 따른 고객 및 협력업체에 대한 대우
4.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의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우려가 높은 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신고

제20조(사전업무협의를)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또는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전담부서 및 계약 담당 부서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 절차를 직접 주관하여 마련하고 그 내용을 모든 임직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③ CP전담부서는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활용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고 결과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제도) ① 임직원은 업무 추진 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CP전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CP전담부서에 보고받은 사실과 내용을 통지한다.

②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CP전담부서는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 및 신고자 등을 알게 된 경우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⑥ 연구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문서 관리) ① CP운영에 관한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문서는 법에서 보존기한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며, 별도 보존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문서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원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제도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CP전담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부서별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2.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3.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
4.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④ CP전담부서는 제3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공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용상황을 연구원 홈페이지 등 정보공개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개방법에는 홈페이지 외에 사내 게시판, 전자우편, 동영상·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CP 운영사항의 전달 및 확인) ① CP전담부서는 CP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정된 CP기준·절차를 사내 게시판 게시, 전자우편 통지, 안내자료 배포 등 3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달 수준은 게시글 열람 수 등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25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원활한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통해 CP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26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의 내용이 연구원의 다른 규정과 충돌할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다만, 본 규정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요청에 의해 자율준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으며 어느 규정이 우선할 지에 대해 자율준수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2026. . .>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의 폐지) 경기연구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경기연구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 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예시: 발주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용역대금 ()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분쟁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분쟁당사자의 현황

2.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3. 기타 관련된 내용

첨부자료

1. 사업자 등록증(필요시)
2.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3. 계약서 등 관련서류(필요시)

신청인 ○○○(주)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정 2023. 12. 11. 개정 2024. 10. 02. 개정 2024. 12. 19. 개정 2025. 9.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기준 및 그 운용 조직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과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법규 위반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 법규준수활동을 의미한다. 3. “자율준수위원회”란 연구원 윤리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의미한다. 4. “자율준수편람”이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란 연구원의 CP운임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감사실장을 말한다. 6. “CP전담부서”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CP를 운영하는 실무조직을 말한다. 7. “CP운영지침”이란 본 규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마련된 세부지침을 말한다. 8. “사전입무협의제도”란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CP전담부서 또는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협의를 미리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상감사도 해당된다. 9. “적점보고제도”란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직원의 명백한 법규 또는 CP제도 위반행위를 확인하거나 임직원이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급성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칙 제정 2026. 9.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 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기준 및 그 운용 조직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과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법규 위반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 법규준수활동을 의미한다. 3. “자율준수위원회”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주관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4. “자율준수편람”이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란 연구원의 CP운임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6. “CP전담부서”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CP를 운영하는 실무조직을 말한다. 7. “CP운영지침”이란 본 규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마련된 세부지침을 말한다. 8. “사전입무협의제도”란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CP전담부서 또는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협의를 미리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상감사도 해당된다. 9. “적점보고제도”란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직원의 명백한 법규 또는 CP제도 위반행위를 확인하거나 임직원이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 하여 직접 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0. “필수 법규”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연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가 요구되는 법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